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 742,2015감고1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치료감호청구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5고합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comment bc id="1"/>

2015감고13(병합) 치료감호청구

피고인겸피치료감호 A

청구인

검사 임하나(기소), 손정숙,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광주지방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9.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4. 07:22경 경기 시흥시 C, 102호 내에서 피해자 ○○○(여 12세)에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D'라는 대화명으로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고 애무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사귀자, 글고 만나서 (성교)할거?" 라고 한 뒤'日 지' (여성의 성기 약어) 사진을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1. 00:04경 자신과 같은 건물 1층인 인천시 부평구 E 101호의 창문 밖에서, 피고인 소지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 \triangle (여, 16세)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약 1분 57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 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기타 성선호의 장애,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해로운 사용'이 진단되었고, 피고인은 '정신성적 장애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치료감호 대상자'라고 감정되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1. 내사보고(동영상 CD 및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카메라 촬영 동영상 파일 첨부)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보고)
-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성벽이 뚜렷한 기타 성적 선호장애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를 가진 자로 향후 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점, ②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법정에서의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징역 1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 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합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전성준 최혜인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미주

[1] 1) 공소장 기재의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된 죄명을 기재한다.